



북경 치쌍화창 전자 주식유한공사와 북경 후이보롱 측정기 유한공사 등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26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8) 二中民终字第11255号
판결 일자	2008년 9월 17일	판결 결과	상소 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북경 치쌍화창 전자 주식유한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1. 북경 후이보롱 측정기 유한공사, 2. 왕깡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 심리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제14조		
영업비밀	D07시리즈 기체질량유량제어 기제품의 12장 기술도면		
키워드 (Keyword)	도면(图纸), 기술비밀(技术秘密), 입증책임(举证责任)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접촉(不正当手段接), 증거부족(证据不足)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는 D07시리즈 기체질량유량제어기 제품(气体质量流量控制器产品)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12장의 설계도에 대해 비밀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심 피고 왕깡은 원래 원심 원고의 회사에서 D07시리즈 기체질량유량제어기제품의 생산을 책임졌으나, 이후 원고의 12장 기술도면을 가지고 피고 북경 후이보롱 측정기 유한공사(이하 '후이보롱공사')에 입사하였다.

원심 원고는 원심 피고들이 생산하는 S49 시리즈 기체질량 유량제어기 제품이 자신의 기술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원심 원고가 왕깡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12장의 도면을 획득,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심 원고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왕깡이 12장의 기술도면을 몰래 가지고 나가 후이보롱 공사에 입사하였다.

원심 원고가 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12장 생산 도면은 관련 직원들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술비밀이 되지 않는다.

후이보롱공사가 생산 판매한 제품이 원심 원고 기계도면을 도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기술비밀을 침해한다.

후이보롱공사가 생산한 제품은 위탁설계인이 설계한 도면으로 원고의 도면과는 관계없다.

왕깡은 원심원고의 기술도면을 접촉하지 않았다.

04 판결 요지

원심 원고 북경 치쌍화창 전자 주식유한공사(이하 '치쌍공사')가 주장한 D07시리즈 기체질량 유량제어기 제품의 12장의 기계부분 도면은 상업비밀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심 원고 치쌍공사는 원심 피고 후이보롱공사와 왕깡이 부정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본안의 12장의 도면을 획득,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원심 원고 치쌍공사는 원심 피고 왕깡이 2005년 8월 사직하기 전에 원심 피고 후이보롱공사와 접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원심 피고 후이보롱공사 제품은 2004년에 생산되었는데, 당시 본안의 12장의 도면에 접촉했다는 것 역시 입증하지 못했다.

치쌍공사가 후이보롱공사와 왕깡이 그 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한국, 중국 모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① 영업비밀이 법정조건에 부합한다는 점, ② 상대방의 정보와 자신의 영업비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③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 ④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 책임이 있다.

본 판결은, 원심 피고 후이보롱 공사 제품이, 원심 피고 왕강이 2005년 12장 도면을 가지고 입사한 것보다 1년여 전인, 2004년에 생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위 ③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기술에 권리자의 기술비밀과 동일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은 권리 침해자가 권리자의 기술비밀을 도용, 표절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부정당한 수단을 통해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획득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일 뿐, 침해자가 권리자의 기술비밀을 부정당한 수단으로 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